

영공통과허가 변경신청서
(Application for Change of Overflight Permission)

※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.

(앞 쪽)

접수번호		접수일시		처리기간 (Durations) 2일(긴급한 항행이 필요한 경우 6시간)															
1. 성명 및 국적		2. 식별부호 및 형식		3. 항행의 경로 및 일시															
국적 (Nationality)	항공사 (Operator)	항공기 식별부호 (Aircraft-identification)	항공기 형식 (Aircraft-Type)	영공통과 기간 (Period of overflight)		운항요일 (Days of Operation)							출발지 (Departure Air-port)	목적지 (Destination Air-port)	진입지점 (In-choon FIR Entry Point)	진입시간 (In-choon FIR Entry Time)	항공로 (Air-way)	이탈지점 (In-choon FIR Exit Point)	이탈시간 (In-choon FIR Exit Time)
				- 부터 from	- 까지 to	M O N	T U E	W E D	T H U	F R I	S A T	S U N							
						1	2	3	4	5	6	7							
기 존 (ORIGINAL)																			
변 경 (CHANGE)																			

4. 운용자 주소(Operator Address):
5. 항공기 등록부호(Aircraft Registration Number):
6. 항행의 목적(Purpose of flight):
7. 기장 및 승무원의 성명(Name of the Captain): (to be submitted by each flight plan)
8. 여객의 성명 및 국적(Name & Nationality of Passengers):
9. 적하의 명세(Freight List):
- 위험물 또는 군수품 등 탑재여부(Dangerous Goods): 예(Yes) [], 아니오(No) []

「항공안전법」 제10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5조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 영공통과허가의 변경을 신청합니다.

In accordance with Article 100(1) of Aviation Safety Act and Article 275(2) Enforcement Regulation of Aviation Act, I hereby submit application for change of overflying permission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항공교통본부장 귀하

Attention: Administrator of Air Traffic Management Office

첨부서류	제9호(화물의 명세)의 위험물 또는 군수품 등을 탑재한 경우 상세 화물명세서를 제출 In accordance with Article 9, If Dangerous Goods are boarded, Submit a detail Freight List	수수료 없음
------	--	-----------

유의사항

신청서는 운항예정일 2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항 예정 시각 6시간 전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.

1. 천재지변 또는 기상악화
2.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해 긴급한 정비가 필요한 경우
3. 환자의 이송
4.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유

처리절차

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.

